

실업시대 사회적 안전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촉구한다.

"저는 모자가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장인 저에게는 정부에서 자립지원금으로 1달에 20,400원을 주는 것과 봄에 20여일 취로사업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젠 취로사업도 일거리가 없어 못합니다. 모자가정은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없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보다도 못한 지원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 여성실업대책본부 활동백서 중에서

실업가구 중 여성가구는 1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용직, 영세자영업 종사자로 IMF 한파로 실직했거나 파산한 경우이다. IMF 경제위기로 여성들은 일터에서 우선해고 대상이 되고있고 재취업이 거의 어려워 실직여성가장의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사회, 경제적 위기는 여성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 경제위기 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이러한 법 원리를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현 경제 위기 하 한계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이 법안은 전통적인 노동 불능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생계보호를 하는 현행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소득이 최저생계에도 못미치는 저소득층에게 예외없이 국가가 생계를 지원해주는 일반적인 공공부조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이 현 경제위기 하에서 날로 증가하는 한계계층의 생활안전을 통하여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동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사회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국민의 최저생계는 보장되어야 한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어찌 소비가 가능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소비없이 생산시장이 활성화 되겠는가? 생산의 저하는 근로자들을 일터 밖으로 내 몰게 되므로 '해고-소비감소-생산저하-해고'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이처럼 위기사회를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도 이 필요성이 인정되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한번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함을 국회와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1999. 3. 7.

한국여성단체연합